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교 통 · 에 너 지 · 환 경 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·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기한을 ‘2026년 9월 30일까지’에서 ‘2026년 11월 30일까지’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00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“2026년 9월 30일”을 각각 “2026년 11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탄력세율) 법 제2조제3 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의2(탄력세율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: 리터당 529 원. 다만, <u>2026년 9월 30일</u> 까 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.	1. ----- ----- --. ----- <u>2026년 11월 30일</u> - -----.
2.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: 리터당 375 원. 다만, <u>2026년 9월 30일</u> 까 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.	2. ----- ----- --. ----- <u>2026년 11월 30일</u> - 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1